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72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」는 청년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된 공공시설을 서북권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조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나.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,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「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」 운영

나. 시설개요

○ 시 설 명 :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-43 일대

○ 시설규모 : 2719.57㎡ (지하 1·2층)

- 공연장, 분장실(4), 다목적실(1), 연습실(4), 실습실(2), 사무실(2) 등

○ 개관일자 : 2020.5월(예정)

다. 위탁기간 : 2020.2월.~2022.12월.

라. 예산요구(안) : 958백만원

마. 위탁사무

○ 서북권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

○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공연·체험교육 등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
○ 공연장 등 시설물과 기타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전문공연장 조성으로 특화(연극·댄스·인디음악 등)된 생활문화 공연예술 지원과 홍대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시민·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사무를 포함하고 있으며,

○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연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(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)

○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(센터 설치· 운영 등)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나. 예산조치

○ '20년 예산 편성필요

다. 합　　의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 ('19.9.19)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박진영 (☎ 2133-2542)

붙 임 관계법령

【지역문화진흥법】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【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】

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

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